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4. 9. 27.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93호로 2024년 9월 13일 전승관 의원 외 6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현행 구정질문 제도의 경우 구의원이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등에게 질문을 하고, 구청장은 당일 현장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즉답의 어려움으로 명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 처리 결과 등 추후 계획에 대한 제출 의무 조항이 없어 규정을 정비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정질문(안 제3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현재 구의원이 구정질문 과정에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사안이나 혹은 지적인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해당 의원에게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 등을 보고 또는 전달하는 과정에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등에 제약사항을 없애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은 일부 조문 정비함.
- 안 제37조제5항에서는 구정질문의 후속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

○ 검토결과

- 구민에게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에 대해서 구의원이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집행기관의 활동 정보를 통한 정책의 변경이나 대안을 이끌어 내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등으로 구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의원의 구정질문 당시 답변되지 못한 사안 등에

대해서 실제 조치 상황이나 향후 계획을 전달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 온 바,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계획과 처리 결과를 일정기간 안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조례에 근거로 규정하여 구정질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7조제5항은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의 보고라는 강행규정이기는 하나,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규정 하였으므로 적절한 규정의 신설이라 판단됨.
-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해당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7개의 자치구에 구정질문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기 제정되어 있음.
-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중 일부인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세부적인 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구정의 각종 현안의 신속한 처리 등으로 구민의 권익에 부합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 현황

	기관명	조례명
1	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2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3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4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5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6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7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8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